

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
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51조제2항에 의거 '중평 에듀팜 특구'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14년 7월 16일

중소기업청장

1. 특구 계획변경 내용

특구명	특화사업 시행기간		사업비 변경(억)		기타 변경사항
	당초	변경	당초	변경	
중평 에듀팜 특구	2009~ 2013	2009~ 2018	1575.5	1575.5	- 기존 특례 계속 적용

2.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

특구명	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	지방자치단체
중평 에듀팜 특구	T:042-481-1607 F:042-481-1620	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 T:043-835-4033 F:043-835-4009 www.jp.go.kr